

 육아정책연구소
2015 이슈페이퍼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만족도 제고

영유아를 둔 취업모의 양육지원 요구 및 정책 방안

유해미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2. 우리나라의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 제도 및 정책 현황
3. 영유아를 둔 취업모의 양육지원 수요
4. 정책 방안



표차례

〈표 1〉 부모가 일할 때 적합한 양육방식에 대한 인식	7
〈표 2〉 긴급 상황 시 희망 돌봄자	8
〈표 3〉 자녀 연령별 양육지원정책 필요도 인식	8
〈표 4〉 일·가정 양립지원 요구	10
〈표 5〉 후속출산 미의향 사유	10
〈표 6〉 최초 기관 이용 시기의 적절성 인식	12
〈표 7〉 퇴근 시각 이전 하원 비율 및 해당 사유	12
〈표 8〉 시간연장형보육 이용 중단 사유	13
〈표 9〉 기관보육·교육 이용 만족도	13
〈표 10〉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사유	14
〈표 11〉 비혈연 대리양육자 이용 만족도	15
〈표 12〉 비혈연 대리양육자 불만족내용	15
〈표 13〉 지역사회 육아지원서비스 필요도	16
〈표 14〉 육아휴직제도 이용기간 및 수요	17
〈표 15〉 남성 육아휴직제도/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이용기간 및 수요	18
〈표 16〉 근로시간 변경 희망	18
〈표 17〉 변경 희망 근로유형별 희망 근로시간	19

요약

- 정부의 일·가정 양립지원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부담 등에 따른 출산 기피 현상은 여전하며,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맞벌이 가구 역차별이 우려되는 등 여성고용 증진 효과가 의문시됨.
- 취업모는 부모가 일할 때 적합한 양육방식에 대해 0~1세아는 부모 직접 돌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60%를 넘고, 해당 연령의 경우 육아휴직, 양육수당제도의 필요도가 높게 나타남.
- 취업모의 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기관보육 운영 시간과 운영 일수, 개인양육서비스 이용비용 부문에서 낮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요구도는 돌봄 시간 지원 부문 즉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시차출근제 활성화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정책 방안으로는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 기구 설치 운영을 통한 성과 모니터링 강화, 맞벌이 가구의 기관 입소 우선순위 및 입소관리 강화, 아이돌봄서비스의 영아 종일제 위주 내실화, 가족친화인증제도 확산 등을 제안함.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가. 연구의 필요성

- 2011년부터 추진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 사회적 돌봄 정책 관련 주요 대책들에서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지원이 강조되고 관련 세부대책이 강화되어 왔으나 정책 효과는 의문시됨.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1차 계획에서 저소득층 위주의 보육지원이 강조되어 맞벌이 가구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였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의 일상화에 주력함(대한민국 정부, 2010).
 - 2013년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50.2%로 정체되어 있고(통계청, 2014b: 23), 결혼과 육아 등으로 30대 여성의 고용율이 하락하는 M자 곡선도 여전히 나타남(통계청,



2014b: 24).

- 2014년 15~54세 기혼여성(956.1만) 중 결혼, 임신·출산, 자녀 양육·교육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은 213만9천명에 달함.

○ 2013년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전년 대비(1.30명) 감소하여 2003년 수준에 머물고 있음(통계청, 2014a: 1).

□ 최근 정부는 2013년 이후 실시된 무상보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2017년까지 고용율 70%를 달성하기 위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제2차 중장기보육계획에서는 무상보육 실시로 인한 맞벌이 역차별 등을 해소하기 위해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전국적 확대와 시간연장형서비스(시간연장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등) 내실화 등을 제시함(보건복지부, 2013: 5).

○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및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2013, 6),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2014, 2)에 이어 지난 해 10월에는 여성고용 후속 보완대책으로 ‘일하는 부모를 위한 일·가정 양립지원 방안’이 제시된 바 있음.¹⁾

□ 이 글에서는 영유아를 둔 취업모의 양육지원 수요를 분석하여 합계출산율과 여성고용율 차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양육지원 개선 방안을 제시함.

나. 일·가정 양립지원과 효과성 논의

□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표적인 지원으로는 1) 보육서비스 2) 휴가·휴직제도 3) 유연근무제를 들 수 있음.

○ 보육서비스는 경제활동 중인 부모가 자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야기되지 않도록 부모를 대신하여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임.

○ 휴직제도는 특히 어린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 시간 동안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게 함.

1)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에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의 확충을 위해 보육실·놀이터 등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대상 설치비, 신축 매입비, 인건비 지원 강화, 의무이행수단 강화 등을 제시함(기획재정부, 2013) ;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에서는 임신·출산 시기의 대체인력 지원 강화, 영유아 시기의 시간제보육 반 시범사업 실시, 초등 시기의 초등돌봄교실 제공과 지역돌봄협의체 운영 컨설팅 지원 강화 등을 제시함(관계부처 합동, 2014: 27-28).

- 유연근무제도는 고용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녀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육아기에 근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함.
- 이들 양육지원과 합계출산율, 여성고용율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보고됨.
 - 1980년대 이전 합계출산율과 여성고용율의 관계는 음(-)의 관계에서 양(+)의 관계로 전환하였는데, 이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환경의 구축에 기인한다고 분석됨(아마구치 가즈오, 2010: 127).
 - 종일제 보육 운영과 영아 대상 기관보육은 부모의 일과 가정생활의 병행에 도움이 되며(Misra, Budig, and Boeckmann, 2012: 28), 특히 만 3세 이전 공보육의 질이 높을수록 여성고용률은 높게 나타남(Misra et al., 2012: 28).
 - 육아휴직은 자녀 출산 이전에 근무하는 비율을 높이나, 휴직 기간에 따라 여성고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이하어 유급 휴직 기간이 20주를 초과할 경우 여성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Hegewisch and Gornick, 2012: 8).
 - 휴직 기간은 영아보육과 동전의 양면으로(Misra et al., 2012: 37), 질 높은 영아 보육이 제공될 경우 취업모의 출산 후 직장복귀는 빨라지고 장기간 휴직의 필요성은 줄어듦.
 - 육아휴직과 근로시간단축제도 이용이 용이한 경우 고용주들은 여성의 고용과 승진을 기피할 수 있고(Hegewisch and Gornick, 2012: 14), 노동시간 감소에 따른 여성의 임금 축소가 우려되므로 양성평등적인 제도 이용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

2. 우리나라의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 제도 및 정책 현황

우리나라의 영유아 대상 양육지원 중 일하는 부모에게 적용되는 내용을 1) 서비스 지원과 2) 돌봄 시간 지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가. 서비스 지원

대표적인 서비스 지원으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제공되는 기관보육과, 가정에서 아이돌보미가 제공하는 가정내 보육을 들 수 있음.



1) 기관보육

□ 지속적인 보육료 지원 확대에 이어 2013년부터는 0~5세 무상보육이 실시되었으며, 2014년부터는 시간제보육반 신설, 직장어린이집 설치·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확대 등이 추진됨.

○ 시간연장보육 지원은 국공립·법인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확대하여 취업모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임(관계부처 합동, 2014: 8).

□ 주요 지원으로는 어린이집 입소 우선권 보장, 종일제 보육 의무화,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지원 등임.

○ 부모가 취업중인 영유아는 어린이집 입소 1순위자로 규정되나, 1순위 대상은 모두 9개 항목에 걸쳐 있어 맞벌이 가구가 우선적으로 입소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어린이집은 보육 실수요자를 위해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하고, 오전 7시 반에서 오후 7시반까지 운영하도록 규정되나, 어린이집 미휴원율은 79.1%에 그치고, 해당 휴원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는 12.3%임(이미화·서문희·이정원·도남희·권미경·양미선·손창균·김경미, 2012: 12).

○ 시간연장형보육에는 시간연장(19:30~24:00), 야간보육(19:30~익일), 24시간보육, 휴일(토요일 제외)보육이 포함되며, 지원 대상은 만 0~2세 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전) 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함.

○ 직장어린이집은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이때 설치비용과 운영비용을 지원하며, 2013년 기준 시설수는 1.4%, 정원수는 2.5%를 차지함(보건복지부, 2014: 6).

□ 민간 인프라 위주의 공급 구조로 공보육 인프라에 대한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0~5세 무상보육 실시로 취업모 자녀가 차별받는 상황이 초래됨 (관계부처 합동, 2014: 7).

○ 2012년 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의 평균 대기 기간은 9.7개월에 달함(이미화 외, 2012: 148-149).

2) 가정내보육

□ 국가 차원의 가정내보육 지원으로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유일함.

- 아이돌봄지원사업은 가정내 보육을 선호하는 취업부모를 위해 2007년부터 실시되었으며, 2012년 「아이돌봄지원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3년 이후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층 위주 서비스를 강화해 옴.
 - 2014년부터 영아종일제 중심으로 개편하고(관계부처 합동, 2014: 8), 2015년에 영아종일제 대기시스템을 도입함.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수는 시간제 돌봄은 2010년 27,339명에서 2013년 47,700가구, 종일제 돌봄은 2010년 124명에서 2013년 3,369명으로 급증함(여성가족부, 2014a: 3).
-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 대상은 한부모, 맞벌이 등 취업 부모의 만 12세 이하 자녀이며, 이용 요금은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함.
 - 지원 대상 우선순위는 2014년에 1) 취업 한부모, 취업 및 맞벌이 저소득 가정, 2) 취업 한부모, 취업 및 맞벌이 일반가정 순으로 조정됨(여성가족부, 2014b: 1).
 - 사업 내용은 시간제 돌봄, 영아종일제, 특별서비스(긴급보육, 기관파견,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으로 구분됨.
- 주된 문제점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미스 매치와 취업모에 대한 배려 부족이 지적되어 왔음(여성가족부, 2014a: 4).
- 2014년 9월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월 평균 대기 가구는 시간제 1,116 가구, 종일제 582 가구임.

나. 돌봄 시간 지원

- 휴가·휴직제도
- 출산에 따른 모성보호와 어린 자녀를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산전후휴가제도, 배우자 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를 운영 중임.
 - 산전후 휴가 기간은 총 90일로 반드시 산후에 45일이 확보되어야 하며, 90일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고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마음더하기 정책포털 <http://momplus.mw.go.kr>).



-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근로자는 출산일로부터 3일간 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필요 시 5일까지 청구할 수 있음(고용노동부, 2014: 11).
-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임.
- 2001년 이후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중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중을 살펴보면, 양 제도 모두 사용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육아휴직 사용 비중은 2007년에 30%를 넘어서기 시작하여 2012년에 약 49%에 달함(박진희·이시균·윤정혜, 2013: 121).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 지원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이며, 최대 사용 기간은 1년이며(고용노동부, 2014: 20), 이때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은 양자를 합하여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2013년 기준 유연근무제 도입 현황을 살펴보면, 시간제 근로 12.5%, 시차출근제 7.6%, 탄력적 근로 8.8%, 재택근무 1.5%로 나타남(여성가족부, 2014a: 37).

□ 2013년 기준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총 522개로, 종사자 50인 이상 사업체(43,484개) 중 1.2% 수준임(여성가족부, 2014a: 37).

3. 영유아를 둔 취업모의 양육지원 수요

2014년 전국 지역의 영유아를 둔 취업모 총 1,736명을 대상으로 육아지원서비스 및 제도에 대한 인식 및 요구를 조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²⁾

가. 양육방식 선호도

- 부모가 일할 때 적합한 양육방식은 아동 연령별로 차별화된 인식을 보임.
 - 0세아와 1세아는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0%를 육박하

2) 이하 내용은 2014년 육아정책연구소 일반과제 「맞벌이 가구의 영유아자녀 양육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임.

는 반면, 4세아와 5세아는 기관 이용이 우세함.

- 기관을 선호하는 비율은 4세아는 어린이집 36.6%, 5세아는 유치원 41.9%로 나타남.

〈표 1〉 부모가 일할 때 적합한 양육방식에 대한 인식

구분	단위: %(명)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부모 직접돌봄	66.4	60.4	49.1	38.9	23.8	18.6
조부모/친인척돌봄	17.6	21.9	24.2	33.1	13.8	11.8
어린이집 이용	10.8	13.0	21.4	18.7	36.6	25.1
가정내비혈연돌봄	2.6	3.3	3.9	6.0	2.9	2.6
유치원 이용	2.5	1.2	1.3	3.2	22.8	41.9
기타	0.2	0.2	0.1	0.1	0.1	0.1
$X^2(df)$	82.164(25)***					
계(수)	100.0(1,736)	100.0(1,736)	100.0(1,736)	100.0(1,736)	100.0(1,736)	100.0(1,736)

주: 1순위 응답 결과임.

*** $p < .001$

○ 양육 방식에 대한 자녀 연령별 선호도의 차이는 실제 주양육자에 대한 응답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0세아의 경우는 조부모 돌봄이 지배적이어서 해당 비율은 약 60%선에 이르며, 어린이집 이용율은 0세아는 28.2%에 그치나, 2세아 69.6%, 3세아 64.8%로 증가하고, 5세아는 유치원 이용율이 46.8%로 어린이집 이용율을 초과함.

○ 이러한 결과는 취업모 대상 양육지원은 양육방식에 대한 선택권 보장을 지향하되, 아동 연령에 따른 지원체계의 구축이 요구됨을 말해줌.

□ 긴급보육 시 희망 돌봄자로는 조부모나 직접 돌봄을 선호함.

○ 급작스런 야근이 발생하는 경우는 조부모/친인척과 기관을 선호하며, 자녀가 아플 경우는 부모가 직접 돌보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74.0%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 긴급 상황 시 희망 돌봄자

구분	아근 등	단위: %(명)	
		자녀가 아플 경우	
부모가 직접 돌봄	-	74.0	
조부모/친인척	71.3	20.6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	19.7	3.6	
친구 및 이웃	5.4	1.3	
비혈연 대리양육자	2.5	0.4	
기타	1.2	0.1	
계(수)	100.0(1,271)	100.0(1,271)	

나. 양육지원 수요 전반

- 양육지원정책별 필요도는 일부 항목에서 자녀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표 3〉 참조).
 - 육아휴직제도와 가정양육수당은 0세아와 1세아에서 두드러진 수요를 보이며, 직장어린이집과 입소대기시스템은 0세아에서 가장 높은 필요도를 나타냄.
 - 반면 근로시간단축, 탄력근무제, 시간연장보육료 지원 등은 자녀 연령에 따른 필요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아 영유아 전반에 걸친 적용이 요구됨을 말해줌.
-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위한 지원 요구는 돌봄 시간 지원 부문에서 높게 나타남(〈표 4〉 참조).
 - 1순위 응답 기준으로 육아휴직 활성화 18.3%,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15.4%, 시차출근제 활성화 14.3% 순임.
 - 1순위와 2순위를 합하면, 시차출근제 27.9%, 육아휴직 활성화 26.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3.7% 순임.

〈표 3〉 자녀 연령별 양육지원정책 필요도 인식

구분	자녀 연령						영유아 구분			전체	(수)
							영아	유아	t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출산전후휴가제도	4.6	4.5	4.5	4.5	4.4	4.5	4.5	4.5	2.143	4.5	(1,736)
유사산후휴가제도	4.2	4.2	4.2	4.0	4.1	4.1	4.2	4.1	3.435**	4.1	(1,736)

(표 3 계속)

구분	자녀 연령						영유아 구분			전체	(수)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영아	유아	t		
배우자출산휴가	4.3	4.3	4.1	4.1	4.0	4.1	4.2	4.1	3.848***	4.2	(1,736)
임신·출산비지원	4.6	4.6	4.5	4.5	4.4	4.4	4.5	4.4	3.626***	4.5	(1,736)
난임시술비지원	4.1	4.2	4.1	4.1	4.0	4.1	4.1	4.1	1.913	4.1	(1,736)
산모신생아도우미	4.2	4.2	4.2	4.2	4.0	4.1	4.2	4.1	2.456*	4.2	(1,736)
근무중 수유	4.0	4.0	3.9	3.9	3.8	3.8	4.0	3.9	2.081	3.9	(1,736)
육아휴직제도	4.6	4.5	4.5	4.5	4.4	4.4	4.5	4.4	3.492***	4.5	(1,736)
가족돌봄휴가제도	4.4	4.2	4.3	4.3	4.1	4.3	4.3	4.2	1.518	4.3	(1,736)
근로시간단축	4.3	4.3	4.3	4.3	4.2	4.3	4.3	4.3	1.503	4.3	(1,736)
탄력근무제	4.3	4.3	4.3	4.3	4.2	4.4	4.3	4.3	0.497	4.3	(1,736)
가족친화기업인증	3.8	3.8	3.8	3.6	3.6	3.6	3.8	3.6	3.186**	3.7	(1,736)
직장어린이집	4.4	4.2	4.2	4.3	4.2	4.1	4.3	4.2	1.904	4.2	(1,736)
입소대기시스템	4.2	4.0	4.0	3.9	3.8	3.8	4.1	3.8	5.500***	3.9	(1,736)
방과후돌봄지원	4.3	4.2	4.2	4.2	4.2	4.2	4.2	4.2	1.440	4.2	(1,736)
시간연장보육료	4.3	4.3	4.2	4.2	4.2	4.2	4.3	4.2	1.949	4.2	(1,736)
시간제보육	4.2	4.1	4.2	4.1	4.1	4.0	4.1	4.1	1.949	4.1	(1,736)
가정양육수당	4.4	4.4	4.3	4.1	4.0	4.1	4.4	4.1	6.533***	4.2	(1,736)
영아아이돌봄	4.1	4.0	4.0	4.0	3.8	3.9	4.1	3.9	3.215**	4.0	(1,736)
시간제아이돌봄	4.1	4.1	4.1	4.1	3.9	4.0	4.1	4.0	2.241*	4.1	(1,736)

주: 평균은 각 항목에 대해 '전혀불필요' 1점~'매우필요'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 후속출산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직장일과 양육의 병행이 힘들어서' 41.5%, 그 다음으로 양육비용이 많이 들어서 30.6%로 나타나는데, 이는 부모의 근로 특성과 가구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임(〈표 5〉 참조).

- 양부모 모두 전일제 근로자인 경우와 모가 전일제 근로자인 경우는 직장일과 양육 병행의 어려움이 후속출산을 기피하는 주된 원인이며, 이는 일반근무자에 비해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자의 경우 더욱 그러함.
- 200만원 이하 가구는 양육비용 부담이 주된 이유가 되는 반면, 이들보다 높은 소득가구에서는 직장일과 양육 병행의 어려움이 후속 출산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드러남.



〈표 4〉 일·가정 양립지원 요구

구분	단위: %(명)	
	1순위	1+,2순위
육아휴직 활성화	18.3	26.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5.4	23.7
시차출근제(탄력근무제) 활성화	14.3	27.9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강화	13.0	24.1
종일제 보육(7:30~19:30)·교육 운영 시간 준수	8.8	17.3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8.0	15.8
양육비(현금) 지원	5.5	14.2
장시간 보육(시간 연장, 야간보육 등) 기관 확충	5.4	16.3
기관(유치원/어린이집) 서비스 질 향상	5.2	13.9
배우자(남편)와의 평등한 육아 분담	3.1	9.3
가정내 보육(아이돌보미) 지원 확대	1.6	5.8
민간 베이비시터 지원 강화(비용 지원, 인력 관리 등)	1.1	3.6
기타	0.3	0.5
계(수)	100.0(1,736)	

〈표 5〉 후속출산 미의향 사유

구분	단위: %(명)					
	직장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힘들어서	양육 비용이 많이 들어서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	건강상의 이유로	기타	계
전체	41.5	30.6	25.6	2.0	0.3	100.0(1,198)
가구 근로형태						
전일제+전일제	45.7	28.5	23.9	1.6	0.4	100.0(966)
전일제+시간제	24.1	39.2	32.8	3.9	-	100.0(232)
본인 근로형태						
전일제	43.8	29.9	24.1	1.8	0.4	100.0(1,037)
시간제	26.7	34.8	35.4	3.1	-	100.0(161)
근무형태						
일반근무	40.2	30.9	26.7	2.0	0.3	100.0(1,020)
교대근무	45.2	30.1	21.9	2.7	-	100.0(73)
야간근무	51.4	27.6	18.1	1.9	1.0	100.0(105)
가구 월소득						
200만원 미만	16.4	40.3	38.8	4.5	-	100.0(67)
300만원 미만	39.3	36.5	23.3	0.9	-	100.0(219)
400만원 미만	41.3	31.8	24.0	2.5	0.4	100.0(242)

(표 5 계속)

구분	직장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힘들어서	양육 비용이 많이 들어서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	건강상의 이유로	기타	계
500만원 미만	41.3	33.8	23.0	1.4	0.5	100.0(213)
600만원 미만	47.7	29.1	21.5	1.2	0.6	100.0(172)
600만원 이상	45.6	21.1	30.2	2.8	0.4	100.0(285)

다. 주요 정책 및 제도별 수요

서비스 지원 부문인 기관보육, 가정내보육, 지역사회 육아지원서비스와 돌봄 시간 지원에 대한 수요를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기관보육

□ 대기 현황 및 선호 기관

-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입소·입학 시에 대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0.8%이며, 평균 대기 기간은 약 8개월로 조사됨.
 - 직장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대기 유경험률은 각각 약 75%과 약 67%에 달하며, 해당 기간은 약 12개월과 약 11개월임.
-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이용 중인데도 타 기관에 대기 신청을 해둔 응답자(162명)에게 해당 사유를 질문한 결과, '국공립기관(국공립어린이집/국공립유치원)에 보내고 싶어서' 38.3%, '집에서 가까운 기관으로 옮기려고' 33.3% 순으로 조사됨.

□ 기관보육 이용 시기의 적절성 인식

- 기관을 이용한 시기별로 해당 시기의 적절성을 질문한 결과, 0세아와 1세아의 경우는 '너무 이르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72.5%, 75.2%에 달하고, 2세아의 경우는 60%선에 육박함.³⁾
- 막내 자녀가 기관을 최초로 이용한 시기가 '너무 이르다'고 응답한 경우 당시 희망했던 양육 방식은 부모의 직접 돌봄이 80.3%로 가장 많았고(다중응답), 그 다음으로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 24.2%로 나타남.

3) 최초 기관 이용 시기는 평균 약 21개월로 조사됨.



〈표 6〉 최초 기관 이용 시기의 적절성 인식

단위: 개월, %(명)

최초 이용시 자녀연령	너무 이르다	적절하다	너무 늦다	잘 모르겠다	계(수)
0세	72.5	25.0	-	2.5	100.0(40)
1세	75.2	20.4	1.8	2.7	100.0(113)
2세	60.2	33.9	0.5	5.4	100.0(186)
3세	53.3	41.5	0.9	4.4	100.0(229)
4세	43.9	50.0	0.9	5.3	100.0(228)
5세	45.3	48.6	1.2	4.9	100.0(243)

〈표 7〉 퇴근 시각 이전 하원 비율 및 해당 사유

단위: %(명)

구분	집에 돌볼 사람이 있어서	남아있는 아이가 별로 없어서	장시간 기관 이용을 원치 않아서	아이가 힘들어 해서	원장 또는 교사의 눈치가 보여서	타 시설 기관에 보내려고	기타	퇴근 시각보다 빨리 하원시키지 않음	계(수)
전체	22.8	20.4	12.5	11.1	7.4	5.0	2.6	18.2	100.0(1,039)

□ 기관 이용시간

- 본인의 퇴근 시각 이전에 하원시키는 주된 이유는 ‘집에 돌볼 사람이 있어서’ 22.8%, ‘남아 있는 아이가 별로 없어서’ 20.4%로 조사되었으며, 그 밖에도 원장 또는 교사의 눈치가 보여서 퇴근 시각 이전에 하원을 시킨다고 응답한 비율도 7.4%로 나타남(〈표 7〉 참조).
- 과거에 시간연장형보육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이용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는 직접 또는 가족이 양육하는 것이 가능해서, 아이에게 부담이 되거나 이용하는 아동이 적어서 등이 지적됨.
 - 해당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어서, 원장 및 교사의 눈치가 보여서 등 비자발적인 이유도 지적됨.
- 이들 사유는 시간연장형보육을 전혀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에도 유사하게 지적됨.

〈표 8〉 시간연장정보육 이용 중단 사유

구분	단위: %(명)			
	시간연장보육	야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직접 양육이 가능해서	20.3(37)	8.3(4)	11.5(3)	16.2(17)
가족이 아이를 돌봐줄 수 있어서	13.2(24)	14.6(7)	3.8(1)	16.2(17)
아이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18.1(33)	22.9(13)	11.5(3)	9.5(10)
이용 아동이 적어서	1.1(2)	2.1(1)	-	6.7(7)
기관이 신뢰가 가지 않아서	0.5(1)	2.1(1)	3.8(1)	1.9(2)
원장 및 교사 눈치가 보여서	3.8(7)	-	3.8(1)	5.7(6)
해당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어서	9.9(18)	4.2(2)	-	4.8(5)
비용 부담 때문에	2.2(4)	2.1(1)	3.8(1)	2.9(3)
(수)	(182)	(48)	(26)	(105)

〈표 9〉 기관보육·교육 이용 만족도

구분	단위: %(명, 점)					계(수)	평균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시설 및 환경	0.3	3.6	29.0	49.4	17.7	100.0(1,034)	3.8
교육·보육내용(프로그램)	0.6	2.5	27.0	49.7	20.2	100.0(1,032)	3.9
특별활동/특성화프로그램	1.0	4.0	31.2	45.6	18.2	100.0(1,028)	3.8
교사의 전문성	0.9	6.4	34.0	41.1	17.6	100.0(1,032)	3.7
부모참여(부모교육 등)	1.6	5.6	43.2	37.3	12.4	100.0(1,027)	3.5
급·간식	0.5	6.1	34.4	40.4	18.6	100.0(1,027)	3.7
이용비용(보육료, 교육비 등)	3.2	13.1	34.6	30.2	18.9	100.0(1,027)	3.5
등원 시각	0.8	4.5	26.2	49.9	18.7	100.0(1,028)	3.8
하원 시각	1.4	8.5	27.8	44.6	17.7	100.0(1,028)	3.7
긴급보육 요청 시 대응 정도	2.6	9.6	39.5	34.9	13.4	100.0(998)	3.5
운영 일수(방학 운영 등)	2.7	13.8	35.3	33.5	14.7	100.0(1,029)	3.4

주: 이용 만족도는 '매우불만족' 1점~'매우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이용 만족도

- 현재 이용 중인 기관의 시설 및 환경 등에 대해 5점 척도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방학 운영 등 운영 일수에 대해 3.2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고, 부모참여, 이용비용, 긴급보육 대응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냄(〈표 9〉 참조).
- 이용 중단 사유가 기관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경우 해당 내용은 교직원에 대한 불만이



주를 이룸.

- 교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44.1%, 원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34.2%, 보육·교육 프로그램과 물리적 환경에 대한 불만족이 각각 28.8%, 22.5%, 기관 운영시간과 근로시간이 맞지 않아서 기관 이용을 변경한 경우는 21.6%로 조사됨.

2) 가정내보육

□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사유는 ‘기관 이용 후 돌봄 사람이 필요해서 59.8%’(다중응답), 그 다음으로 자녀가 어려서 기관에 적응하기 어려울까봐 36.4%, 원하는 시간에 기관을 이용할 수 없어서 20.3% 순으로 조사됨.

- ‘자녀가 어려서 기관에 적응하기 힘들까봐’라고 응답한 비율은 0세아와 1세아에서 각각 69.1%와 61.4%로 높게 나타남.

〈표 10〉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사유

단위: %(명)

구분	기관 이용 후 돌봄 사람이 필요해서	자녀가 어려서 기관에 적응하기 힘들까봐	원하는 시간에 기관을 이용할 수 없어서	이용 비용이 부담되어서	자녀가 원해서	이용 희망 기관에 대기자가 많아서	기타	(수)
전체	59.8	36.4	20.3	9.4	7.7	7.0	5.6	(858)
자녀연령								
0세	33.0	69.1	26.6	13.8	3.2	12.8	6.4	(94)
1세	44.8	61.4	25.5	6.2	2.8	13.1	6.2	(145)
2세	62.0	38.0	20.9	8.6	4.9	7.4	3.7	(163)
3세	69.8	24.9	13.6	10.1	9.5	5.3	6.5	(169)
4세	73.9	18.8	19.6	12.3	10.1	2.2	5.8	(138)
5세	64.4	18.8	18.8	7.4	14.1	3.4	5.4	(149)
영유아 구분								
영아	49.0	53.7	23.9	9.0	3.7	10.7	5.2	(402)
유아	69.3	21.1	17.1	9.9	11.2	3.7	5.9	(456)

주: 다중응답 결과임.

□ 비혈연 대리양육자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활동(돌봄서비스)내용, 부모와의 소통, 이용시간, 이용 일수에 대해서는 비교적 만족하나,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낮은 만족도를 보임(〈표 11〉 참조).

- 민간베이비시터 월 평균 이용비용은 704,000원으로 이용 중인 육아지원서비스 중 가장 높고, 해당 비용 부담은 4.0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음.
- 비혈연 대리양육자가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경우 주된 사유로는 돌보미의 전문성 신뢰성 부족과 과도한 이용비용이 지적됨(〈표 12〉 참조).
- 혈연 또는 비혈연 대리양육자가 갑자기 못 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빈도는 가끔 있거나 자주 있는 경우가 각각 37.1%, 3.0%로 조사되어 긴급보육 시 고충이 예상됨.

〈표 11〉 비혈연 대리양육자 이용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평균
활동(돌봄서비스)내용	2.0	6.1	34.7	44.9	12.2	100.0(49)	3.6
부모와의 소통	8.2	8.2	38.8	16.3	55.1	100.0(49)	3.6
이용시간	4.1	8.2	32.7	34.7	20.4	100.0(49)	3.6
이용 일수	4.1	6.1	40.8	28.6	20.4	100.0(49)	3.6
물리적 환경	4.2	4.2	43.8	41.7	6.3	100.0(48)	3.4
돌봄 인력의 전문성	4.1	12.2	49.0	18.4	16.3	100.0(49)	3.3
긴급보육 요청 시 대응 정도	4.1	14.3	38.8	34.7	8.2	100.0(49)	3.3
이용비용	10.2	22.4	34.7	20.4	12.2	100.0(49)	3.0

주: 만족도 평균점수는 '매우불만족' 1점~'매우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표 12〉 비혈연 대리양육자 불만족내용

단위: (명)

구분	(수)
돌보미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다	(17)
이용비용이 비싸다	(17)
시간 조정이 어렵다	(9)
돌보미 개인 집에서 양육 등 양육 환경을 신뢰하기 어렵다	(3)
보육 신청 후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	(1)
제도 홍보가 부족하다	(1)

3) 지역사회 육아지원서비스

- 기관보육·교육 등 보육지원 이외에 체험프로그램 등 지역사회 육아지원서비스의 필요도는 모든 항목에 걸쳐 높게 나타남.



- 특히 아동발달검사, (어린이)도서 대여, 아이돌봄서비스, 육아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한 높은 필요도를 보임.

〈표 13〉 지역사회 육아지원서비스 필요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필요없음	필요없음	필요함	매우 필요함	계(수)	평균
(가족)체험프로그램	0.7	8.0	59.3	32.0	100.0(1,147)	3.2
부모교육	0.9	10.9	58.0	30.2	100.0(1,169)	3.2
부모상담	0.6	12.1	56.6	30.7	100.0(1,171)	3.2
육아정보제공	0.5	7.2	53.2	39.0	100.0(1,178)	3.3
아동발달검사	0.4	5.2	45.8	48.6	100.0(1,178)	3.4
품앗이 육아	1.5	24.2	49.0	25.3	100.0(1,122)	3.0
일시보육	2.0	20.1	45.1	32.8	100.0(1,132)	3.1
장난감 대여	1.9	14.3	47.8	36.0	100.0(1,182)	3.2
도서 대여	0.9	8.4	46.4	44.2	100.0(1,191)	3.3
아이돌봄서비스	2.0	11.9	43.0	43.1	100.0(1,166)	3.3

주: 평균은 각 서비스에 대해 '전혀필요하지않음' 1점~'매우필요함'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이처럼 높은 필요도에도 불구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육아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수준임.

- 어린이 도서, 장난감 대여 서비스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높아 각각 51.6%, 49.6%인 반면, 품앗이 육아(공동육아나눔터)와 일시보육 인지도는 각각 15.5%, 16.8%에 불과.
- 근로 형태별로는 시간제에 비해 전일제 근로자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이들의 서비스 접근성 강화 노력이 요구됨.

4) 돌봄 시간 지원

□ 취업모가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이용기간은 평균 11개월이었고, 해당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은 47.1%에 달함.

- 육아휴직 이용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자의 희망 이용기간은 26.4개월로, 실제 이용기간 보다 16개월 길게 나타남.
- 육아휴직 이용기간은 직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차이를 보임.

〈표 14〉 육아휴직제도 이용기간 및 수요

단위: 개월, %(명)

구분	이용 기간	이용기간 충분성		희망 이용기간	
		불충분함	계(수)	평균	(수)
육아휴직제도	10.9	47.1	(295)	26.4	(139)
직장규모					
5인미만	13.1	23.5	(17)	11.0	(4)
5-9인	9.1	43.7	(16)	27.4	(7)
10-29인	8.2	46.8	(47)	26.8	(22)
30-99인	12.3	49.3	(75)	26.8	(37)
100-299인	8.2	60.9	(46)	26.0	(28)
300인 이상	12.4	43.6	(94)	27.4	(41)
$F/X^2(df)$	2.704*	7.972(5)		0.688	
업종					
광공업	7.5	42.9	(21)	30.1	(9)
건설업	10.3	40.0	(20)	22.8	(8)
도소매 /숙박업	20.3	33.3	(6)	15.0	(2)
전기/운수/통신/금융	9.0	38.2	(26)	29.8	(10)
사업/개인/공공서비스등	12.4	47.5	(118)	29.4	(56)
$F/X^2(df)$	3.038*	1.292(4)		0.484	

주: 이용기간의 충분성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임.

희망 이용기간은 이용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자에게 조사한 결과임.

* $p < .05$

□ 배우자가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한 적이 있는 경우 이용기간은 평균 12개월이며, 해당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75.0%임.

○ 이용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자의 희망 기간은 약 18개월로, 실제 이용기간 보다 6개월 길게 나타남.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의 이용기간은 평균 약 13개월이며, 해당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40.7%임(〈표 15〉 참조).

○ 이용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자의 희망 기간은 약 37개월로, 실제 이용기간 보다 24개월 길게 나타남.



〈표 15〉 남성 육아휴직제도/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이용기간 및 수요

단위: 개월, %(명)

구분	이용기간	이용기간 충분성		희망 이용기간	
		불충분함	(수)	평균	(수)
남성휴직제도	12.4	75.0	(24)	18.3	(18)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12.5	40.7	(54)	37.2	(22)

주: 이용기간의 충분성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임.

희망 이용기간은 이용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자에게 조사한 결과임.

□ 육아기 근로시간 변경을 희망하는 비율은 62.2%로 조사됨(〈표 16〉 참조).

- 해당 비율은 자녀가 어릴수록 높게 나타나 0세 부모는 72.2%에 달하며,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자의 해당 비율은 각각 68.1%, 72.8%임.
- 대체로 현재의 근로시간 즉 전일제와 파트타임 근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육아와의 병행이 용이하도록 근로시간을 조정하기를 희망하며, 전일제 근로자가 파트타임 근로를 희망하는 비율은 약 31%임.
- 근로시간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희망 근로시간은 대체로 오전 9시 이후에 시작하여 오후 7시 이전 종료이며, 파트타임으로 변경하기를 희망한 경우는 오전 10시 이후 근무를 시작하여 오후 6시 이전 종료를 원함(〈표 17〉 참조).

〈표 16〉 근로시간 변경 희망

단위: %(명)

구분	근로시간 변경희망			변경 희망 근로유형				계(수)
	희망 비율	전체 (수)	전일제 근무	파트타임 근무	현재의 전일제를 유지하되 근로시간만 변경	현재의 파트타임을 유지하되 근로시간만 변경	기타	
전체	62.2	(1,736)	5.4	30.4	57.9	5.4	0.9	100.0(1,079)
가구 근로형태								
전일제+전일제	64.0	(1,421)	5.5	29.3	63.5	0.9	0.9	100.0(909)
전일제+시간제	54.0	(315)	4.7	36.5	28.2	29.4	1.2	100.0(170)
$X^2(df)$	10.963(1)***				250.348(4)***			
본인 근로형태								
전일제	58.5	(1,509)	-	31.1	68.0	-	0.9	100.0(883)
시간제	24.2	(227)	9.1	-	-	87.3	3.6	100.0(55)

(표 16 계속)

구분	근로시간 변경희망		변경 희망 근로유형					계(수)
	희망 비율	전체 (수)	전일제 근무	파트 타임 근무	현재의 전일제를 유지하되 근로시간만 변경	현재의 파트타임을 유지하되 근로시간만 변경	기타	
$X^2(df)$	1.410(1)		312.073(4)***					
근무형태								
일반근무	60.4	(1,451)	4.7	31.7	57.9	5.0	0.7	100.0(877)
교대근무	68.1	(116)	15.2	26.6	41.8	15.2	1.3	100.0(79)
야간근무	72.8	(169)	4.1	23.6	68.3	1.6	2.4	100.0(123)
$X^2(df)$	11.669(2)**		45.213(8)***					

주: 근로시간 변경 희망 비율은 변경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경우임.

** $p < .01$, *** $p < .001$

<표 17> 변경 희망 근로유형별 희망 근로시간

구분	시작 시각	종료 시각	단위: 시, (명) (수)
전일제근무로 변경	9.2	6.9	(58)
파트타임 근무로 변경	10.0	5.8	(328)
현재의 전일제로 유지하되 근로시간만 변경	9.5	6.8	(625)
현재의 파트타임을 유지하되 근로시간만 변경	9.7	5.7	(58)

4. 정책 방안

위의 분석결과들을 토대로 맞벌이 가구 대상 양육지원의 기본 방향 및 세부 전략, 그리고 양육지원 내실화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가. 기본 방향 및 세부 전략

-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의 방향으로 향후 보다 강조되어야 할 바는 1) 일하는 부모의 돌봄 권리 증진을 통한 선택권 보장, 2) 남성의 부모권 강화를 통한 양성평등적 돌봄 문화의 실현, 3) 노동 환경의 개선을 통한 일·가정 양립 기반 조성임.



- 기존의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은 부모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간연장형보육을 강화해왔으나, 일·가정 양립의 주된 갈등은 '시간' 부족으로 나타나므로 '자녀를 돌볼 권리'에 주목하여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추구함.
 - 장시간 근로 등 가정과의 병행이 어려운 직장 환경 하에서는 보육서비스 강화만으로 일·가정 양립 갈등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노동시장 부문(기업)의 일·가정 양립지원에의 사회적 책임과 실천 강화를 추구함.
 - 단, 돌봄 시간 지원 강화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도의 이용이 여성에게 치중될 경우,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 부담 등에 따른 출산 기피와 육아기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어려우므로 남성의 부모권 강화를 동시에 추구함.
- 기본 방향의 실현을 위한 세부 전략으로는 1) 서비스 지원과 돌봄 시간 지원간의 균형적 설계와 2) 맞벌이 가구 특성별 정책 설계가 요구됨.
- 기존의 양육지원은 서비스 지원 특히 기관보육 지원에 치중된 경향이 있으므로 '돌봄 시간' 지원의 실효성 강화에 주력함.
 - 자녀 연령별, 근로 특성별로 세분화된 정책 설계를 요함.
 - 0~1세아는 부모의 직접 양육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하므로 휴직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영아 종일제 돌봄서비스 강화하며, 4세 이후는 유치원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므로 유치원의 종일제 보육을 내실화하며, (돌봄)시간 지원은 0~5세아에 걸쳐 실효성 강화가 요구됨.
 - 전일제 근로가구는 종일제 기관보육의 우선 입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야간근무자는 아이돌봄서비스 등 가정내보육에 대한 선택권을 보다 강화하며, 시간제 근로자는 시간제 보육 이용 대상으로 규정함.

나.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 내실화 방안

□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의 기반 조성

○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 종합계획 수립

-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와는 구분되는 양육 시 애로사항과 양육지원 수요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이에 부합하는 별도의 종합계획이 수립된 바 없음.
- 맞벌이 가구의 양육지원을 명시한 기본계획 또는 종합계획들에서 일·가정 양립지

원은 여성고용 증진, 출산을 제고, 가정생활의 만족도 차원에서 각각 강조되므로 맞벌이 가구의 양육지원 방안으로는 한계를 지님.

-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하도록 규정된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경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해당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관련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 영유아를 둔 맞벌이 부모들의 ‘일할 권리’와 ‘자녀를 돌볼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되는 양육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 세부사업별 목표치를 명시하여 실효성 제고가 요구됨.

○ 범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 일·가정 양립지원을 주관하는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지원의 핵심 사업인 보육사업과 아이돌봄지원사업 등의 주관 부처가 아니며, 여성의 노동권 보장과 더불어 부모권 보장 즉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 전반을 포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됨.
-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여성가족부는 일·가정 양립지원의 핵심인 기관보육사업을 담당하고 있지 않아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일·가정양립대책위원회(가칭)’를 별도로 설치·운영하여 체계적인 종합계획의 수립과 성과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

○ 맞벌이 가구 대상 종합서비스 기관 설치·운영

- 취업모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실질적인 다양한 상담서비스와 취업모들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육아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마련된 종합서비스 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됨.
-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는 여성근로자를 위한 육아 등을 위한 공공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등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는 민간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됨(동법 제23조).
-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취업모의 경력단절 예방과 육아관련 각종 상담 및 지원을 위한 시설이 적극적으로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 기준과 운영 사항을 마련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비용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모색함.



□ 기관보육 내실화

○ 보육 실수요를 반영한 입소 우선순위 조정

- 현행 어린이집 입소는 1순위자 대상자가 9개 항목에 달하여 맞벌이 가구의 우선 입소를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임.
- 맞벌이 가구는 저소득층, 장애부모,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등과 더불어 기관보육 수요가 높고, 일차적인 종일제 보육 수요자로서 인식됨(유해미·배운진·김문정, 2014: 156-157 ; 유해미·이정원·이세원, 2013a: 109-111).
- 맞벌이 가구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상향조정 하는 등을 통해 실질적인 우선 입소를 보장함.

○ 입소관리 강화

- 맞벌이 가구 증빙 서류를 확인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어린이집 52.3%, 유치원 약 40%선에 머물고,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기관에서도 해당 서류를 입소 시 한차례만 확인하는 비율이 약 67%에 달하여 전반적으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남(유해미·배운진·김문정, 2014: 163).
- 3월 입소 시에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증빙서류를 잘 구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매 분기별로 조정한 기록을 점검하며, 맞벌이 가구 적용 기준 즉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로자에 대한 면밀한 선별을 명시함.

○ 연중 운영과 종일제 운영 정상화

- 현행 규정에 의하면, 운영 일수와 운영 시간은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구한 경우는 조정이 가능하나 이는 사실상 운영 시간의 단축이 가능함을 암시하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평일 운영시간도 지도 점검 항목으로 포함하여 실질적인 12시간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함.
- 운영 일수와 관련하여 휴가 계획의 수립 공지와 근로자의 날 사전 보육 수요조사는 임의로 적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운영 지침에서 일괄 삭제함.

○ 영아 대상 공보육 인프라 접근성 강화

- 영아 기관보육의 질적 수준 보장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효과를 지니므로 영아 대상 공보육 인프라 확충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함.

○ 시간연장형 보육 운영 적절성 제고

- 시간연장보육을 제외하면 휴일보육, 야간보육, 24시간 보육의 수요는 낮은 수준이므로 특히 시간연장보육의 내실화가 요구됨.
- 기관 차원에서 시간연장보육 운영 시 주된 애로사항으로 교사 채용 및 배치 문제가 지적되므로 유치원에 비해 보조인력이 부족한 어린이집의 보조인력 추가 지원 방안이 요구됨.

○ 맞벌이 가구의 기관 운영 참여 지원

-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시에 보호자 대표로서 맞벌이 가구의 일정 비율 이상 참여를 권고함.
- 어린이집운영위원회와 유치원운영위원회 등 각종 부모참여 기구나 프로그램은 맞벌이 가구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 운영하고, 맞벌이 가구가 일정 비율 참여토록 권고함.
 -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기관 운영 시간, 보육과정 운영 등 어린이집 운영사항을 심의하므로 맞벌이 가구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시 맞벌이 가구가 일정 비율 참여토록 권고함.
 - 교원과 학부모로 구성되는 유치원운영위원회에 맞벌이 가구가 일정 비율 참여토록 권고함.

□ 가정내보육의 선택권 강화

- 0~1세아를 둔 취업모의 경우 기관보육에 비해 가정내보육 수요가 두드러지므로 아이 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종일제 근로가구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위주로 운영함.
- 이를 위해 영아 종일제 돌봄서비스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영아 종일제 제공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의 희망 이용 시간은 휴직제도에 비해 길게 나타나므로 적용 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되, 양성평등적인 제도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함.

□ 지역사회 육아지원서비스 접근성 보장

- 기관보육 이외에도 부모상담 등 지역사회내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으나, 전일제 취업모와 비전형적 근로시간에 근무하는 취업모는 시간제 취업모에 비해



서비스 인지도와 이용률이 낮은 수준임.

- 평일 1회 야간 운영과 토요일 상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함.

□ 기업의 돌봄 시간 지원 실효성 강화

- 육아휴직 활성화는 일·가정 양립 지원 중 가장 높은 수요를 보이나, 정책 효과 차원에서 남성의 이용율이 중요하므로 해당 실적을 가족친화제도 인증 지표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남성의 제도 이용이 용이한 사회 환경을 구축함.
- 근로시간단축제도의 경우 휴직제도에 비해 제도 이용율이 저조하므로 일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현행 규정(「남녀고용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을 개정하여 실효성을 높임.
-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게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해당 내용을 직원과 일반에 공지하도록 함(유해미·정주영·양유진, 2013b: 174).
 - 기업 내 가족친화제도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가족친화 직장교육 대상에 담당 부서의 임직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기대함.
- 가족친화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가족친화포럼을 내실화하되, 참여 기관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업종별, 기업규모별로 운영하여 제도 운용 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함.
- 일·가정 양립 갈등의 주된 원인인 장시간 근로 문화를 개선하며, 특히 미취학 아동을 둔 맞벌이 가구의 초과근로나 야간근로 등을 금지함.
 - 근로시간 변경을 희망한 경우 해당 근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6시 이전으로 전일제 근로 대비 소폭의 감소를 보이므로 장시간 근로 문화의 개선으로 수요를 포괄할 여지가 있음.

□ 기타

- 정책 홍보 강화
 - 취업자들의 양육지원정책 인지도는 제도별로 그 격차가 심하여 휴가와 휴직제도, 양육수당 등 비용지원정책의 인지도는 높은 반면, 기업의 역할이 수반되는 가족친화기업인증, 근로시간단축, 탄력근무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보이므로 제도 홍보 노력이 요구됨.

- 이를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홍보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적용 사례를 담은 운영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는 방안을 모색함(유해미·정주영·양유진, 2013b: 175).
- 남성 대상 양육지원 프로그램 강화
 - 남성의 양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남성 대상 양육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되(아버지 교육), 자녀와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 등), 이를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외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해당 프로그램 활성화를 기함.

참고문헌

국내문헌

- 고용노동부(2014). 일과 가정의 행복한 균형 만들기.
- 관계부처 합동(2014). 여성고용 후속 보완대책-일하는 부모를 위한 일·가정양립지원 방안.
- 기획재정부(2013). 보도자료: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 대한민국 정부(20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
- 박진희·이시균·윤정혜(2013). 고용보험 DB를 활용한 노동시장분석. 한국고용정보원.
- 보건복지부(2013). 보도자료: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마련(2013. 12. 31).
- 보건복지부(2014). 보도자료: 직장어린이집 직접 설치 사업장 대폭 증가(2014. 4.29).
- 야마구치 가즈오(山口一男)(2010). 일과 가정의 양립과 저출산. 이충남 역. 서울: 보건사회연구원.
- 여성가족부(2014a). 제2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기본계획(안).
- _____ (2014b). 2014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 유해미·이정원·이세원(2013a). 어린이집 입소 우선 입소 내실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유해미·정주영·양유진(2013b). 일·가정 양립을 위한 남성의 자녀 양육지원 실태와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유해미·배운진·김문정(2014). 맞벌이 가구의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이미화·서문희·이정원·도남희·권미경·양미선·손창균·김경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통계청(2014a). 보도자료: 2013년 출생통계(2014. 8. 26).
- 통계청(2014b). 2014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청·여성가족부.

해외문헌

- Hegewisch A., & Gornick J. C. (2012). "The impact of work-family policies on women's employment: review of research from OECD countries". *Work and Family Policy: International Comparative Perspectives*. Routledge.
- Misra J., Budig M., & Boeckmann I. (2012). "Work-family policies and the effects of children on women's employment hours and wages". *Work and Family Policy: International Comparative Perspectives*. Routledge.

보도자료

- 통계청(2014a). 보도자료: 2013년 출생통계(2014. 8. 26).

웹사이트

- 마음더하기 정책포털 <http://momplus.mw.go.kr> (검색일 2015년 5월 30일)